

IV.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V.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FAX : 2133-0738) 및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1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3개 구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3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133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자치구	구역수	구역명
강남구	6개소	개포택지개발지구, 국제교류복합지구, 논현지구, 대치지구, 청담지구, 한국과학기술회관지구
강동구	3개소	고덕택지, 암사지구, 천호지구
강북구	4개소	4.19사거리지구, 미아삼거리역지역중심, 삼양사거리, 수유번동지구
강서구	8개소	공항중심지구, 공항로지구, 등촌지구, 목동사거리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서울발산지구, 우장산역지구
관악구	5개소	낙성대생활권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신림지구중심, 은천생활권중심, 봉천지역중심
광진구	6개소	건대입구역지구, 구의사거리, 군자역지구, 자양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구로구	3개소	개봉역, 구로디지털단지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	4개소	가산, 문성지구, 정심생활권중심, 금천구심 지구
노원구	7개소	노원구역,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수락지구, 월계5지구, 월계 생활권중심, 중계2택지, 중계택지
도봉구	5개소	도봉생활권중심, 도봉역세권, 방학역세권, 쌍문 생활권중심,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	7개소	배봉 생활권중심, 신설, 신이문 생활권중심, 이문 생활권중심, 장한평(동대문), 전농지구중심, 회기구역
동작구	4개소	대림지구(동작구), 신대방지구(동작구), 사당·이수, 상도지구
마포구	9개소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경의선 홍대입구역, 대흥지구, 마포지구, 신촌지구일대, 신촌지구, 아현1지구, 아현2지구, 합정지구
서대문구	4개소	서대문구청주변, 신촌지구, 천연지구, 충정지구
서초구	3개소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양재택지개발지구, 우면택지개발지구
성동구	4개소	금호지구중심, 독섬주변지역, 왕십리 광역중심, 장한평(성동)
성북구	7개소	동선지구중심, 동소문동2가, 미아지구상세계획구역, 보문 생활권중심, 석관지구중심, 월곡, 정릉생활권중심
송파구	8개소	개롱, 거여지구, 방이1지구, 삼전, 석촌역주변지구, 송파대로, 올림픽로, 위례(서울)
양천구	6개소	김포가도(양천)지구, 목동, 목동오거리, 신월생활권중심, 신정생활권중심, 신정네거리
영등포구	5개소	당산생활권중심, 대림지구중심, 대림2생활권,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신길동
용산구	3개소	용산, 이태원로주변, 한남
은평구	10개소	구산생활권중심, 구청생활권중심, 독바위, 불광, 수색지구, 연신내, 신사생활권중심, 역촌역세권, 응암생활권중심, 응암로지구
종로구	4개소	대학로, 동대문, 북촌, 숭인2
중구	3개소	약수, 퇴계로변, 회현
중랑구	6개소	면목생활권중심, 면목지구중심, 묵동지구중심, 상봉생활권중심, 신내택지개발지구, 중화생활권중심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안)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